

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-141호

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「고객 맞춤형 소포 시험적 실시(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-47호)」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30일

우정사업본부장

‘고객맞춤형 소포’ 시험적 실시

1. 개요

등기 취급을 전제로 고객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체국 방문 수령, 내용품 사진 제공, 거점 활용 접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취급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함

※ 세부 서비스 명칭, 서비스 개요, 이용가격, 서비스 수준(중량, 크기 등) 및 취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시험적 실시

※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 예외 적용

2. 주요내용

가. 대상우편물 : 창구접수 등기소포우편물

나. 서비스별 세부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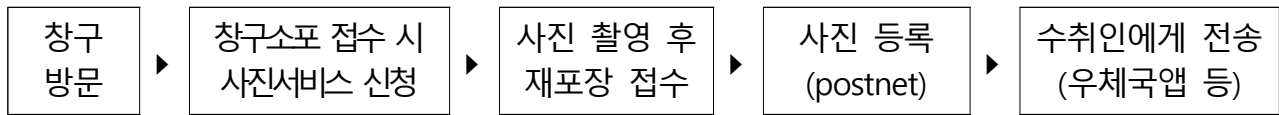
1) 「소포물품 사진서비스」(이하 “사진서비스”라 한다)

가) (서비스 개요)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등기소포우편물의 물품을 우체국이 촬영하여 수취인에게 그 사진을 전송해 주는 서비스

- 제품의 성능(고장 및 진품 여부 등), 품질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, 단순히 사진 촬영을 통해 해당 물품 외형만을 수취인에게 사진으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임

- * 우체국에서는 제품의 성능, 진위 여부, 품질, 거래에 대한 분쟁 등에 대한 보장 및 책임을 지지 않음

< 사진서비스 제공 프로세스 >



나) (부가 이용 수수료) 500원(소포 1통당 1매 전송, 2025.1.10.부터)

- * 다만, 2025년 1월 9일까지의 수수료는 1,000원으로 종전과 동일함
- * 고객 납부 요금은 중량·크기에 따른 소포 요금 및 부가 이용 수수료를 합산

다) (사진 전송) 결제 완료 시 수령인에게 메시지(URL) 전송*

- * 메시지 전송 순서 : 포스트톡 → 카카오톡 → 네이버톡톡 → SMS 문자

라) (사진 매수) 발송인이 촬영을 요청한 물품의 사진 1매

- * 카메라 사양 : 400만 화소 이상

마) (재포장 접수) 사진 촬영과 결제 완료 후 직원이 보는 창구 접수대에서 고객이 직접 재포장한 후 직원이 접수

바) (접수취소·반환) 기존 창구소포 취소·반환 프로세스와 동일

- * 사진서비스만 단독으로 취소 또는 착불소포 취급 등 불가

사) (서비스 관서) 수도권 및 경남·충청지역 시·군·구 대표우체국 134국

- * 지방청별 현황 : 서울청 22국, 경인청 43국, 부산청 37국, 충청청 32국
- * 사진서비스 시범 관서 명칭, 주소, 전화번호는 별도 첨부

아) (시행 기간) 2025. 1. 1.(수) ~ 별도 공고 시까지

- * 종전의 제2024-47호 공고에 따른 시행 기간은 제외함(2024.5.24. ~ 12.31.)

2) 기타 신규서비스

- 향후 신규서비스 시행 시 이 공고문을 개정하여 재공고 예정

부 칙

1. 이 공고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「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24-47호」는 폐지한다.